< 변 경 대 비 표 >

- 1. 변경 대상 투자신탁 : 키움 쿼터백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
- 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: 2017.05.25.
- 3. 주요 변경 사항 :
 - 환매 청구시 기준가 적용일 변경(17시 이전: 3영업일 → 4영업일, 17시 경과 후: 4영업일 → 5 영업일)
 - Class AG 수익증권 및 CG 수익증권 신설
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

[규약]

항 목	변 경 전	변 경 후
제3조(투자신탁	①~② (생략)	①~② (현행과 동일)
의 명칭 및 종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
류)	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	1. ~10. (생략)	1. ~10.(현행과 동일)
	<u><신설></u>	11. Class AG 수익증권: 투자자문업자로부터
		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
		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
		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(선취판매수수료
		<u> 징구)</u>
		12. Class CG 수익증권: 투자자문업자로부터
		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
		<u>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</u>
		<u>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</u>
제10조(수익증권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
의 발행 및 예	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	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
탁)	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	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
	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	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
	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	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	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
	1. ~10. (생략)	1. ~10.(현행과 동일)
	<u><신설></u>	<u>11. Class AG 수익증권</u>
		<u>12. Class CG 수익증권</u>
제27조(환매가격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
및 환매방법)	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	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
	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	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
	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	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	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	부터 <u>제 4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</u>
	제 4 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	제 5 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
	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	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
	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 2 조제	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 2 조제
	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	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
	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	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
제39조(투자신탁	①~② (생략)	①~② (현행과 동일)

보수)	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	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
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
	이	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
	··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
	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	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
	-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
	G	한다.
	_ · 1. ~ 10. (생략)	 1. ~ 10. (현행과 동일)
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11. Class AG 수익증권
		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0
		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3.7
		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5
	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
		0.25
		 12. Class CG 수익증권
		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0
		<u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5.2</u>
		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5
	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
		0.25
제40조(판매수수	① (생략)	① (현행과 동일)
료)	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	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
	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	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
	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	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
	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	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
	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	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	1. Class A1 수익증권: 납입금액의 0.7% 이내	1. Class A1 수익증권: 납입금액의 0.7% 이내
	2. Class A-e 수익증권: 납입금액의 0.35% 이내	2. Class A-e 수익증권: 납입금액의 0.35% 이내
	<u><신설></u>	3. Class AG 수익증권: 납입금액의 0.5% 이내
	<u>3.</u> Class C1 수익증권, Class C-e 수익증권,	<u>4.</u> Class C1 수익증권, Class C-e 수익증권,
	Class C-F 수익증권, Class C-W 수익증권, Class	Class C-F 수익증권, Class C-W 수익증권, Class
	C-P 수익증권, Class C-P2(퇴직연금) 수익증권,	C-P 수익증권, Class C-P2(퇴직연금) 수익증권,
	Class S 수익증권, Class S-P 수익증권: 없음	Class S 수익증권, Class S-P 수익증권, <u>Class</u>
		<u>CG 수익증권</u> : 없음

[일괄신고서, 투자설명서]

항 목	변 경 전	변 경 후	
제1부.	<신설>	Class AG 수익증권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	* 가입자격: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	
제2부.		<u>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</u>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	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	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	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 (선취판매수수	
11. 매입, 환매, 전환기준		<u>료 징구)</u>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		* 선취판매수수료: 연 0.50% 이내	
한 사항		* 환매수수료: 없음	
		* 투자신탁보수:	
		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70%	

		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37%</u>
		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5%</u>
	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0.025%
		Class CG 수익증권
		* 가입자격: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
		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
		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
		<u>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</u>
		* 선취판매수수료: 해당사항 없음
		<u>* 환매수수료: 없음</u>
		* 투자신탁보수:
		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70%
		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52%
		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5%</u>
	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0.025%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관한 사항		
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	나.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	나.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
· 환기준	①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] ①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
2) 환매	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(D+2)	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(D+3)
	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	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
	 업일(D+7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	 업일(D+7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
	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	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
	니다.	니다.
	· ·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	· ·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
	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	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
	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	(D+4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
	제9영업일(D+8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	제9영업일(D+8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
	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	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		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에 관한 사항		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		 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		102 % 202 12-4 00
사항		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		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관한 사항		TOE TE-A OF
4)운용자산규모		
제5부. 4. 이해관계인		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		100 100 00
1)이해관계인과의		
기래내역		
/ I 네 네 ㅋ		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변 경 전	변 경 후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주 1) 생략된 종류(Class C-F, C-W, C-P, C-	주 1) 생략된 종류(Class C-F, C-W, C-P, C-

-주석사항	P2(퇴직연금), S-P)와 관련한 세부사항은	P2(퇴직연금), S-P, <u>AG, CG</u>)와 관련한 세부
	투자설명서 참조	사항은 투자설명서 참조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17 시 이전: <u>제 3 영업일</u> 기준가/ 제 8 영	17 시 이전: <u>제 4 영업일</u> 기준가/ 제 8 영
- 환매방법	업일 지급	업일 지급
	17 시 경과후: <u>제 4 영업일</u> 기준가/ 제 9	17 시 경과후: <u>제 5 영업일</u> 기준가/ 제 9
	영업일 지급	영업일 지급
Π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보 - (1) 투자전략		
4. 운용전문인력		
5. 투자실적 추이		